

〔'99. 2. 2〕
제83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사 회 도 시 위 원 회
(전문위원 전 영 희)

- 목 차 -

- ▣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
- ▣ 공유재산관리계획(취득)승인의결안 6
- ▣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8
- ▣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

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1999년 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■ 제안사유

- 사회복지 관련 기금운용조례가 3건으로 제정 운용되고 있으나 유사기금 통·폐합 운용지침에 의거, 3건의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,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기 위함.

■ 주요골자

- 통합기금 조례명 : 사회복지기금(안 제2조)
- 통합대상기금 조례 :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,
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, 노인복지기금
- 기금의 재원 : 구 출연금,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,
기타 잡수입(안 제3조)
- 기금의 운용관리(안 제5조)
 -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계정
 -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계정
 - 노인복지기금 계정
-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용(안 제6조)
 - 위원수 : 위원장 포함 9인 이내(위원장 : 부구청장)
 - 구 성 : 당연·임명직 5인, 위촉직 4인(임기 3년)
- 위원회의 기능 : 기금 운영계획, 기금결산 등에 관한 사항
- 회계공무원 지정(안 제11조)
 - 기금운용관(사회사업국장)
 - 기금분임운용관(사회복지과장)
 - 기금출납원(담당주사)

■ 참고사항

○ 지방자치법 제133조

■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 및 개별 법령에 의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,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 조례 제·개정시 법령 검토의 미흡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제의 요구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
- 행정자치부의 기금 표준조례안에 의거 광주광역시에서도 이에 관련 각종 설치, 운용조례 제·개정시 공통적으로 규정할 『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 조례안』을 제정 통보함에 따라
- 우리 구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금운영조례 중 1996년 1월 18일 조례 제359호로 제정된 『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』와 1992년 2월 27일 조례 제218호로 제정된 『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』 및 1995년 2월 14일 제정된 『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』가
- 유사기금 운영조례로 판단되어 이를 통·폐합하여 『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』 제2조, 사회복지기금 조례로 통합 운영함은 의미가 있다고 보며, 안 제5조,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3개의 기금 계좌를 별도로 구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, 효율적인 기금 운용 관리라고 보아집니다.
- 또한 현재 3개로 운용되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1개의 심의위원회로 통합함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.

그러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,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과 노인복지기금 조례는 업무의 혼선 예방과 조례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며,

-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통합조례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아 이번 조례의 내용들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 바 긍정적으로 처리 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■ 참고자료

- 기금 운용관리 지침 사본
-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조례안 사본
- 지방자치법 요약, 지방재정법 요약
- 폐기 대상 조례 사본